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책펀드의 자펀드 청산금 재투자근거 마련 등〉
■ 서왕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68호)

2025. 7.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정책펀드의 자펀드 청산금 재투자근거 마련 등 (안 제53조제6항 및 제53조의2 각각 신설)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서왕진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4. 23.

다. 회 부 일 : 2025. 4.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펀드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을 지분투자하는 지원 방식으로, 2005년 이후 각 부처는 다수의 신규 정책펀드를 편성하고 있음.

그런데 정책펀드는 모태펀드-자펀드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자펀드의 청산금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각 펀드의 규약에 따라 재투자되고 있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모태펀드의 회수재원 규모나 회수재원 투자 방향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책펀드의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책펀드 운영의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펀드가 체계적으로 관리·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6항 및 제53조

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정책펀드의 자펀드 청산금 재투자근거 마련 등 (안 제53조제6항 및 제53조의2 각각 신설)

현행	개정안
○ <신설>	○ <u>정책펀드의 자펀드 청산시 청산금 재투자 근거 마련(안 제53조제6항 신설)</u> - 국가가 출자·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펀드가 출자한 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할 수 있음.
○ <신설>	○ <u>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근거 마련(안 제53조의2 신설)</u> - 국가가 출자·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및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개정안은 국가가 출자·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 정책펀드가 출자한 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해당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다음연도 회수재원 추계 및 재투자 계획 등이 포함된 보고서

를 작성해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현행법 제17조¹⁾는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빠짐없이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관철하는 경우 예산과정에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예산 외로 운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현행법 제53조는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제1항), 현물출자(제2항), 차관물자대 초과지출(제3항), 전대차관의 도입 및 상환(제2항 및 제4항)

1)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 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 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을 열거하고 있음.

한편,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재정을 지분투자하는 지원 방식의 정책펀드²⁾가 부처별로 다수 운영되고 있음.

정책펀드는 펀드 구조에 따라 나누면 모펀드-자펀드 방식과 단일펀드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모펀드-자펀드 방식의 경우 모펀드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간 벤처캐피탈 등이 결성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 펀드로 운용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운용 시 단년도 예산편성 및 결산방식에서 벗어나 회수재원 재투자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자펀드에 분산투자하여 투자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음³⁾.

대표적으로 중소기업모태펀드(2005년), 농림수산물식품모태펀드(2010년), 노후산단 업종고도화를 위한 산단환경개선펀드(2011년), 한국산업은행 정책펀드(2018년)가 조성되는 등 각 부처별로 정책목적에 따라 정책펀드를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 모태펀드-자펀드 방식으로 운영되는 정책펀드의 자펀드가 청

2) 국내 정책펀드 현황 및 제도 개선,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2022. 3.

3) 중소기업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종합평가, 국회예산정책처, 진달래, 2024.11.

산될 때 해당 청산금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각 펀드의 규약에 따라 재투자되고 있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모태펀드의 회수재원 규모나 회수재원 투자 방향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정부가 출자·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펀드가 재출자한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해당 청산금은 국고로 회수할 수 있도록 협약서·운용지침에 반영하여야 하며, 국고 회수 전 청산금을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벤처투자모태조합 규약」 및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규약」에서는 투자된 자금이 회수되는 경우 조합 만기를 고려하여 재투자하도록 규정⁴⁾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청산금의 재투자 방식은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고, 자펀드의 청산금을 재투자하여 장기간 안

4) 「벤처투자모태조합 규약」

제32조 (투자의 방법) ① 투자는 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에서 발행하는 조합출자증서의 취득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투자한 자금이 회수되는 경우 조합만기를 고려하여 재투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규약」

제32조 (투자의 방법) ① 투자는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농식품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서 발행하는 조합출자증서의 취득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투자한 자금이 회수되는 경우 조합만기를 고려하여 재투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적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에
개정안과 같이 자펀드의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가 가
능하도록 현행법에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명시함으로써 정책펀드 운
용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또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다음연도 회수재원 추계 및 재투자 계획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모태펀드 회수재원의 규모는 금융시장
상황, 금리 추이 등 시장 여건에 따른 변동성이 높아 사전 추정액과
실적액이 매년 20~30%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추계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 ⑤ (생략) <u><신설></u>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국가가 출자·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펀드가 출자한 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투자할 수 있다.</u> <u>⑦ (현행 제6항과 같음)</u>
<u>⑥ (생략)</u> <u><신설></u>	<u>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u> <u>국가가 출자·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및 제53조제6항에 따른 재투자계획,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문 의 처
02)6788-5160